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
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4월 1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0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관련 [별표1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기구표>에 ‘봉담청
소년문화의집’을 신설한다.

제5조 제1항 관련 [별표2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원표> 중 <직렬별
정원표>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합계 ‘88’을 ‘96’으로 하고 행정직 ‘72’를 ‘79’, 기술직 ‘12’를 ‘13’으로
한다.

제5조 제1항 관련 [별표2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원표> 중 <직급별
정원표>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총계·계 ‘88’을 ‘96’, 일반직 3급 ‘16’을 ‘17’, 4급 ‘15’를 ‘18’, 5급
‘24’를 ‘26’로, 6급 ‘28’을 ‘30’로 한다.
- 행정직·계 ‘72’를 ‘79’, 행정직·3급 ‘13’을 ‘14’, 행정직·4급 ‘12’를
‘15’, 행정직·5급 ‘19’를 ‘21’, 행정직·6급 ‘24’를 ‘25’, 기술직·계

‘12’ 를 ‘13’ , 기술직·6급 ‘4’ 를 ‘5’ 로 한다.

제5조 제1항 관련 [별표2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원표> 중 <국 단 위 직급별 정원표>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합계·총계 ‘88’ 을 ‘96’ 로, 합계·사무국 ‘23’ 을 ‘24’ 로, 합계·여성비전센터 ‘23’ 을 ‘22’ 로, 합계·청소년수련관 ‘20’ 을 ‘21’ 로, 합계·청소년사업국 ‘19’ 를 ‘26’ 로 한다.
- 일반직 계·총계 ‘87’ 을 ‘95’ 으로, 일반직 계·사무국 ‘22’ 을 ‘23’ 로, 일반직 계·여성비전센터 ‘23’ 을 ‘22’ 로, 일반직 계·청소년수련관 ‘20’ 을 ‘21’ 로, 일반직 계·청소년사업국 ‘19’ 를 ‘26’ 로 한다.
- 3급 소계·총계 ‘16’ 을 ‘17’ , 3급 소계·청소년사업국 ‘4’ 를 ‘5’ , 3급 행정·총계 ‘13’ 을 ‘14’ , 3급 행정·사무국 ‘2’ 를 ‘1’ , 3급 행정·여성비전센터 ‘3’ 을 ‘4’ , 3급 행정·청소년사업국 ‘4’ 를 ‘5’ , 3급 행정+기술·사무국 ‘1’ 을 ‘2’ , 3급 행정+기술·여성비전센터 ‘1’ 을 ‘0’ 으로 한다.
- 4급 소계·총계 ‘15’ 를 ‘18’ , 4급 소계·윤리감사팀 ‘0’ 을 ‘1’ , 4급 소계·사무국 ‘4’ 를 ‘5’ , 4급 소계·청소년사업국 ‘3’ 을 ‘4’ , 4급 행정·총계 ‘12’ 를 ‘15’ , 4급 행정·윤리감사팀 ‘0’ 을 ‘1’ , 4급 행정·사무국 ‘3’ 을 ‘4’ , 4급 행정·청소년사업국 ‘3’ 을 ‘4’ 로 한다.
- 5급 소계·총계 ‘24’ 를 ‘26’ , 5급 소계·사무국 ‘9’ 를 ‘7’ , 5급 소계·여성비전센터 ‘5’ 를 ‘6’ , 5급 소계·청소년사업국 ‘3’ 을 ‘6’ , 5급 행정·총계 ‘19’ 를 ‘21’ , 5급 행정·여성비전센터 ‘5’ 를 ‘6’ , 5급 행정·청소년사업국 ‘3’ 을 ‘4’ , 5급 기술·사무국 ‘3’ 을 ‘1’ , 5급 기술·청소년사업국 ‘0’ 을 ‘2’ 로 한다.

- 6급 소계·총계 ‘28’ 을 ‘30’ , 6급 소계·윤리감사팀 ‘1’ 을 ‘0’ , 6급 소계·사무국 ‘5’ 를 ‘7’ , 6급 소계·여성비전센터 ‘10’ 을 ‘8’ , 6급 소계·청소년수련관 ‘4’ 를 ‘5’ , 6급 소계·청소년사업국 ‘8’ 을 ‘10’ , 6급 행정·소계 ‘24’ 를 ‘25’ , 6급 행정·윤리감사팀 ‘1’ 을 ‘0’ , 6급 행정·사무국 ‘3’ 를 ‘4’ , 6급 행정·여성비전센터 ‘10’ 을 ‘8’ , 6급 행정·청소년수련관 ‘4’ 를 ‘3’ , 6급 행정·청소년사업국 ‘6’ 을 ‘10’ , 6급 기술·총계 ‘4’ 를 ‘5’ , 6급 기술·사무국 ‘2’ 를 ‘3’ , 6급 기술·청소년수련관 ‘0’ 을 ‘2’ , 6급 기술·청소년사업국 ‘2’ 를 ‘0’ 으로 한다.

제5조 제2항 관련 [별표3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팀별 업무분장표>에 ‘봉담청소년문화의집’ 을 신설한다.

- ‘봉담청소년문화의집’ 을 신설하고 업무분장에 ‘청소년 문화체험, 캠프 운영, 청소년 교육, 창의체험활동,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’ 을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